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5.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0. 5. 26.
- 다. 상정일자: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가. 제안이유

마포구립도서관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신설되어 그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마포구립도서관 수강료 감면대상자(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 신설 (안 제13조 및 별표)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종의)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5.22. 제출되어, 의안 번호 제52호로 2020.5.26.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9.2.25. 김진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9.3.28. 조례 제1212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2항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 2.수강료 나.감면기준2)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신설한다.’로 정하고 있음.

1)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 2.수강료 나.감면기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신설한다.

2)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제13조제3항 관련)**

2. 수강료

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50%	3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3.28)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제2항³⁾을 근거로 2019.11.19. 제1회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심의 결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의 2. 수강료에서 가. 부과기준⁴⁾ 대비 나. 감면 기준의 감면비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마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여타 자치구 유사시설 감면기준(별첨1)과 우리구 수강료 감면대상자별 감면비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표 1〉 병역명문가 선정 대표가문 현황

구분	전국	서울시	마포구	비고
대표가문 수 (비율, %)	4,890 (100)	685 (14.0)	21 (0.4)	2018.12.31.기준

※ 자료출처: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2020.1월 기준 마포구 25가문은 집행부 추계자료)

3) 제3조(기능)

- 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0. 4)
1. 교통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4)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제13조제3항 관련)

2. 수강료

가. 부과기준

구분		수강료	비고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월 35,000원 이하	
	어린이영어프로그램	월 60,000원 이하	
외국어프로그램		월 100,000원 이하	
특기적성프로그램		월 125,000원 이하	

- 1) 운영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2)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중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은 어린이영어도서관에 한한다.

[별첨1]

타 자치구 유사시설 감면 기준

자치구명	시설명	감 면 내 용			
		대 상	금 액(원)	비 율	
강서구	강 서 평생학습관	수강료	외국어 프로그램	200,000	50%
			대학 등 위탁과정	150,000	
			학력보완 프로그램	100,000	
			삶의질향상 프로그램	60,000	
동작구	동 작 평생학습관	수강료	월30시간 이하 프로그램	30,000	50%
			월20시간이하 프로그램	20,000	
			월10시간이하 프로그램	10,000	
양천구	양 천 평생학습관	수강료	12주 이상 프로그램	100,000	50%
			8주~12주 프로그램	50,000	
			4주~8주 프로그램	30,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